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7
----------	------

제출년월일 : 2008. 6.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시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총무과 소관 일부 위원회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당연직 위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자구(字句) 수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추가하여 시정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조례상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한 자구(字句)를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규정발췌서 : 별첨

-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지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2008. 5. 22. ~ 2008. 6. 2.(12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2008. 5. 1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지방세법 제221조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에 의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0.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제출 등) ① 각 부서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김 진 근
	담당 직위·성명	기획담당 이 경 래
	담당자 성명·전화	김 민 정 (행정 2799)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97
----------	------

제안년월일 : 2008. 7. 7.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위원회의 수시 개최에 있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 순서를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 요 골자

- 위원회의 수시 개최에 있어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 일부 조문 순서를 법 체계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4조(회의) ① (생략)</p> <p>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u>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u></p>	<p>제4조(회의)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위원회가 소집하여 개최한다.</u></p>
<p>제5조(의안제출 등) ① 각 부서장은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p>	<p>제5조(간사) (원안 제7조와 같음)</p>
<p>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6조(의안제출 등) (원안 제5조와 같음)</p>
<p>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7조(의견의 청취) (원안 제6조와 같음)</p>